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 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5.1)관련 정원감축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」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현 정원 1,312명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

1,249명으로 63명 감축

-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82명에서 1,220명으로 62명 감축
-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축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규정 【별표1】 , 【별표2】

다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규정 【별표3】

## 3. 개정근거

가. 지방자치법(2008.2.29 법률 제8852호)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(2008.7.3 대통령령 제20900호) 제24조, 제25조, 제29조, 제30조

다.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5.1)

**4. 조례안 :** 별첨

**5. 예산조치 :** 별도조치 없음

**6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(2008. 8. 11 ~ 8. 18) 결과

- 구의회사무기구 정원조정(28명→29명) 의견 반영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08.8.19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원의 총수)**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249명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220명
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9명

**제3조(정원책 정기준)**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 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 
②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4조(직급별 정원)**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직렬별 정원)**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**①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3명은 초과현 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**③(한시정원)**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식품안전추진반장 5급 1명은 2010.12.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**[별표 1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**

구 分	일반직	기능직 · 고용직	별정직 · 정무직
비 율	( 74 )% 이상	( 24 )% 이내	( 2 )% 이내

## 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·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3. 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은 78%이상으로 기능 · 고용직의 비율은 20%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한다.

**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**

## 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1)% 이내	(31)% 이내	(30)% 이내	(10)% 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## 2. 기능직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(3)% 이내	(10)% 이내	(30)% 이내	(32)% 이내	(25)% 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## 3. 별정직공무원
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율	(14)% 이내	(20)% 이내	(47)% 이내	(19)% 이상	

## 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249			1,249	
정무직	1			1	
일반직 계	937			937	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6	31		9	16
6급 이하 계	873			873	
별정직 계	15			15	
5급 상당	2		2		
6급 상당 이하 계	13			13	
기능직 계	296			296	